

'25년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

에너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기술사업화 우수 모델 및 유망기업 발굴을 통한 혁신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25년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대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한국표준협회장

1

목 적

- ☐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KEPCO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유망 사업모델 및 사업화 주체를 발굴·지원하여 혁신기업 기반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개 요

- ☐ 접수기간 : '25. 4. 21(월) ~ 5. 12(월) 18:00까지(3주간)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startup@ksa.or.kr
- ☐ 주최 및 주관 : 한국전력공사 / 한국표준협회
-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공모부문

①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 KEPCO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여 대규모 매출·수익,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②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 KEPCO의 유망 에너지신기술*과 참여기업의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 중 우수모델 발굴

* '24년 KEPCO 사업화 유망기술 88건(별첨 참조)을 비롯하여 한전에서 출원·등록한 특허(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활용)

□ 참가자격

①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 KEPCO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했거나* 사업 중인 기업

* 통상·전용 실시권 허여기간 종료된 사업도 참여 가능

②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 모집 공고일('25.4.2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창업 7년 이내 기업 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제외대상 : [붙임1] 참조

- 접수일 기준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대표자,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포함된 경우(대표자, 기업)
- 한전에서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대표자, 기업)
- '25년 한전의 협력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자(대표자, 임직원)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표자가 해당 업종 기업을 보유중인 또는, 신청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보유중인 경우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 [별표 1]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시상 및 특전

①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 총 5개사

구 분	훈 격	시상규모	부 상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개사	CES 2026 참관
최우수상	한국전력공사 사장	2개사	
우 수 상	한국표준협회 회장	1개사	중동지역 수출촉진회 참여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회장	1개사	

- CES 2026 참관과 중동지역 수출촉진회*는 기업당 1인에 대한 참가 비용 지원으로 세부사항은 선정기업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기간 : '25.11.23~27 / 장소 : 사우디(리야드), 쿠웨이트(쿠웨이트 시티)

②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 총 5개사

구 분	훈 격	시상규모	사업화자금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개사	3천만원
최우수상	한국전력공사 사장	2개사	기업당 2천만원
우 수 상	한국표준협회 회장	1개사	기업당 1천만원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회장	1개사	

- 사업화자금 집행기준 및 세부내역은 선정기업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업 특전(공통)

- (기술이전) 전문가 활용 최적기술 매칭 및 기술가치평가 소요 비용 지원
- (기술지원) 전력연구, KENTECH 등 전문가의 현장지도 및 시험·실증 지원
- (판로확대) 혁신제품 인증 지원 및 한전 주관 수출촉진회 우선 참여
- (자금지원) 산업은행 및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투자유치·자금융자 지원

5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 총 3단계 평가(서류→발표→최종) 및 역량강화 캠프 운영



○ (1차, 서류평가) 공모 신청 시 제출한 기술사업화 성과(우수사례 부문) 및 사업계획서(BM 콘테스트 부문)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

※ 발표평가 방식(대면/온라인),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 추가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 기업의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발표자료는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3차, 최종경연) 발표평가 평가점수 상위 5개 기업(총 10개사) 대상 발표경연 및 순위결정

※ 역량강화 Camp로 발표자료 제작 지원, 기업의 대표자 발표 원칙

※ 발표시간 10분 분량의 PPT 파일 제출

□ 평가기준

①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 기술사업화 추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정량 + 정성)

구 분	정량	정성
항목명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사업화 노력도, 기술사업화 확장 계획

②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 기업의 역량 및 BM의 실현가능성과 성장성 등 중점 평가 (정성)

구 분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세부항목	기술이해도, 기술 보유 역량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경영진 역량, 확대 가능성

□ 추진일정

진행절차	세부내용	일정
서류접수	이메일 접수 - startup@ksa.or.kr	'25. 4.21(월) ~ 5.12(월) 18:00
↓		
1단계 서류평가	공모부문별 전문가 평가	'25. 5월 중
↓		
2단계 발표평가	공모부문별 전문가 평가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25. 6월 중
↓		
역량강화 Camp	BM고도화 및 발표역량 강화 컨설팅	'25. 6월 중
↓		
3차 최종경연	전문가 및 일반국민 평가를 통한 시상순위 결정, 발표 10분	'25. 6월 중
↓		
사업화 지원	유망 기술 BM 컨테스트 선정기업 5개사의 기술사업화 지원	'25. 7월~'26. 2월
중동지역 수출촉진회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우수상 2개사	'25. 11월 중
CES 2026 참관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대상 1개사, 최우수상 2개사	'26. 1월 중

6

사업 신청 · 접수

□ (공고기간) '25. 4. 21(월) 09:00 ~ 5. 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up@ksa.or.kr

< 신청·접수 유의사항 >

- 동일기업이 ①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②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모두 참여 신청 혹은 각 공모분야별로 다수의 건을 접수할 수 있으나, **중복 시상은 불가하며 수상 희망 1개 사례(혹은 BM)**을 선택하여야 함.
- 신청·접수는 5.12(월) 18: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등 신청사항 수정·변경은 신청기한(25. 5. 12 18:00) 이내에만 가능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증빙서류

- 양식 별로 파일명 맨뒤에 신청기업명을 기재, 파일은 PDF로 변환 후 제출, 제출건이 여러건일 경우 파일명 맨뒤에 숫자 부여

예시) 참여신청서_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사례_참여기업명1

< 제출서류 >

①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②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1. 참여신청서 [양식 1] 참여신청서_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사례	1. 참여신청서 [양식 1] 참여신청서_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2. 증빙서류	2.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연도별 재무제표(성과 창출년도~'24년) -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서 - 연도별 재무제표(최근 3개년) -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양식 1과 2의 작성내용이 상이하니, 공모분야를 확인 후 제출 요망

□ 문의처

업무담당	연락처	비 고
한국표준협회	02-6240-4787	

-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모전 신청자에게 있음
- ☐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사례」가 여러건일 경우 각 사례별로 제출해야 하며, 여러건을 한 신청서로 제출할 경우 1건으로 인정 함
- ☐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참여 BM이 여러건일 경우 각 BM별로 제출해야 하며, 여러건을 한 신청서로 제출할 경우 1건으로 인정 함
- ☐ 평가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선정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수상기업은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붙 임 : 참가신청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1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대표자, 기업)																					
2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3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4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포함된 경우(대표자, 기업)																					
5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업태를 영위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6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표자가 아래의 업종 기업을 보유 중인 경우, 신청기업이 아래의 업종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중인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 [별표 1]																					
	<table><tr><th>구분</th><th>대상 업종</th><th>코드번호</th></tr><tr><td>1</td><td>· 일반유흥주점업</td><td>56211</td></tr><tr><td>2</td><td>· 무도유흥주점업</td><td>56212</td></tr><tr><td>3</td><td>· 기타 주점업</td><td>56219</td></tr><tr><td>4</td><td>·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td><td>63999-1</td></tr><tr><td>5</td><td>·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td><td>91249</td></tr><tr><td>6</td><td>· 무도장 운영업</td><td>91291</td></tr></table>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주점업	56219	4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 무도장 운영업	91291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주점업	56219																				
4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 무도장 운영업	91291																				
7	- 한전에서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자(대표자, 기업)																					
8	- 한전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대표자, 임직원)																					
9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